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합니다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제1조 (서류의 제출) 본인은 대출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.

① 제출서류
- 가. 외상매출채권 대출신청서
- 나.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
- 다.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

②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①항의 서류를 귀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③ 거래처(구매업체)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상기 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제2조 (입금계좌 지정)

대출금 또는 외상매출채권 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.

계좌번호 : 예금주 :

제3조 (개별대출의 실행)

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(인터넷) 등의 방법으로 귀행의 전산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[귀 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, 그 채권의 채무자인 _____(이하 "거래처"라 합니다)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전산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, 이하 "매출채권"이라 합니다]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, 귀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.

②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

① 원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

② 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, **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 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 원 약정서 제8조2항의 환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**

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업체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

제5조 (대출의 제한)

①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③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④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약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'거래처의 협력업체들(본인 포함)에 대한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'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6조 (지연이자 수취)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"상생협력법")」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이하 "하도급법")」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

5-06-0573(2-1) (2021.04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1-약관-288 호(2021.03.23)

하나은행

② 구매기업이 「하도급법」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

제7조 (정보제공의 동의)
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"거래처"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제8조 (면 책)
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 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②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9조 (상환 의무)
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인터넷뱅킹등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,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10조 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
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.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
2.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
3.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

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자로 본 이용약정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
본 추가약정, 원 약정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합니다.

본인은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	본 인	(인)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인(채무자)

본 인 : _____ (인)

주 소 :

거래처(구매기업)

업 체 코 드: _____

중 심 기 업 명: _____

중심기업사업자번호: _____

5-06-0573(2-2) (2021.04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1-약관-288 호(2021.03.23)

하나은행